

## 화협상담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봄호에서도 본·지부에서 개최됐던  
특수건물 소유주 초청 간담회에서의 주요 질문사항 및  
답변 내용을 간추려 실는다. 〈편집자 주〉

### ●보험상담

**문:**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노후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충분히 계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천전기]

**답:**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장법인인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정률법 내지는 정액법에 의거 실시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은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가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담 보험료는 다소 증가하겠으나 감가상각률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재산보호를 고려하여 이제시 충분한 보상으로 원상복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천지부]

**문:** 저희 한국개발리스는 연간 2,000여건의 공장 보험계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피혁, 제지, 페인트 등 공장요율이 타업종 공장에 비해 높은 반면 대전의 경우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적정요율이란 사고율과 일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국내 사고율을 감안하여 요율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개발리스(주)대전지점]

**답:** 지난 '86년 9월 15일자로 개정된 요율서를 보면 공장의 복합구조 건물의 경우 우열급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요율이 인하되었으며 공장공정별 요율은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에서 국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다음 요율 개정시는 충분히 검토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리라 봅니다. [보험 2부]

**문:**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뒷면을 보면 “전기위험 부담보 추가약관” 즉, 발전기, 여자기, 개폐기 등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그 기기 자체는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재손실이 나면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을 특별약관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 호남사니]

**답:**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기기 자체에서 화재가 아닌 과부하, 발열 등에 의하여 생긴 손해일 때에는 기기 자체는 보상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기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전기기기 자체까지의 보상을 위해서라면 “전기위험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 계약하여야 되며, 보험료가 약간 부담이 되지만 공장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점언합니다. [광주지부]

**문:** 화재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금 지급시 보험가액 대비 보험금액으로 비례보상을 하고 있는데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가를 현실화할 수는 없는지요? [신진건설산업(주)]

**답:** '84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하고 있는 1년 이내의 감정원 감정서 가액, 상장법인 장부 가액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특수건물 시가결정 기준액표상의 가액으로 부보된 건물은 대개 피해액에 가까운 보상을 하고 있으며, 규정된 시가범위 초과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대전지부]

**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준공된 건물도 화보험회의 안전점검시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개수가 곤란한 사항은 건물 소유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건축 허가시부터 협회가 관여해 줄 수는 없는지요? [부산백화점]

**답:** 건축허가시점에서 저희 협회가 관여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신축과정에서 준공전에 저희 협회에 기술자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중 극히 개수가 곤란한 사항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건의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부, 부산지부]

**문:** 저희 서문시장은 1지구부터 5지구까지 각 지구의 시설이 비슷하는데도 지구마다 안전점검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소방관서와 화보험회의 점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요.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를 행정관서에 통보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서문시장 1지구]

**답:** 동일구조, 동일용도의 건물일지라도 연면적이 상이하면 설치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다르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 점검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는 건물의 위험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강화 또는 완화시켜 적용시킬 수도 있으나 저희 협회는 방재상 필요시 국내의 관련법규는 물론 외국 규정도 적용시키고 있는 바, 이런 점에서 점검결과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결과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부]

**문:** 스프링클러의 오동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벨브를 구비하여 1개는 막아 놓고 1개는 어느 정도 수압을 주어 맞추어 놓고 있는데 이러

한 상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영창약기]

**답:**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시공할 때에 무조건 섭씨 72도에서 작동하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종종 물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나 설치장소에 따라, 예를 들면 열이 나는 부분은 감지온도가 92도, 102도 등 그 설치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로 선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부]

**문:** 사고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사전의 철저한 점검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의뢰시 세대당 얼마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바, 전세대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귀 협회에서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6 동신시영아파트]

**답:** 저희는 대구시내 3,000건 이상의 특수건물을 14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파트전 세대를 정밀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시 점검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별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점검을 요청하면 검토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부]

**문:** 본 남부시장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점검결과 통보를 받고 있으나 시설자금에 있어서나 기타 설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는지요? [남부시장]

**답:** 남부시장은 1동부터 6동까지 연결된 상태로서 단일 동으로 보아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시설자금 관계는 저희 협회에서 특수건물에 대하여 하고 있는 소화설비 개량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 2부, 전주지부]

혼란속에 안정없고 안정없이 발전없다.